

정밀안전진단·점검 및 성능평가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재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8조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우리 사무소에서 시행할 정밀안전진단·점검 및 성능평가용역 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사업자를 선정 하기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0. 6. 16.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용역명	용역개요	도급예정액	용역기간	평가방법
국도19호선 소태육교(상) 등 6개교 정밀안전점검 및 내하성능평가용역	소태육교(상,하), 음성IC교, 신당교, 탄지교, 성천교	176백만원	5개월	PQ

※ 도급예정액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며, 예산확보 및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용역사업 개요

노선	교량명	위치	규모(m)		준공 년도	형식		시설물 등급	비고
			연장	총폭		상부	하부		
19	소태육교(상)	충주 소태 구룡	580	10.5	2007	STB	RAP	1종	점검
19	소태육교(하)	충주 소태 구룡	580	10.5	2007	STB	RAP	1종	점검
37	음성IC교	음성 음성 신천	30.3	25.0	2006	PSCI	RTA	3종	점검,내진
36	신당교	충주 살미 신당	76.9	10	1983	PSCI	RAP	3종	내하
36	탄지교	제천 한수 탄지	91.8	10	1983	PSCI	TP	3종	내하
36	성천교	제천 덕산 수산	39	10	1983	RCS	SGP	3종	내하

※ 점검 : 정밀안전점검 / 내진 : 내진성능평가 / 내하 : 내하성능평가

3. 입찰예정시기 : 추후 별도공지

4.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 1) 본 과업의 참가자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 전문기관(해당 분야 : 교량 및 터널)으로 등록된 업체로 하며(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제출), 사업책임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미달 시 실격처리 한다.
- 2)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시설물에 대해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은 PQ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 3)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자격 취득자와 학력 또는 해당분야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4)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사업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이어야 하며, 미달 시 실격처리 한다.
- 5) 과중한 업무 중복 방지를 위하여 본 공고에 명시된 용역 사업에 대해 용역사업자는 2개 이상 용역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다.
- 6) 본 용역사업은 용역금액(공급가액) 2억원 미만 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은 충청북도에 소재를 둔 용역사업자로 한정한다.
- 7) 입찰집행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현재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나.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 1) 평가자료 작성방법 : 우리 사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 공고기간 : 2020. 6. 16.(화) ~ 6. 21.(일) (6일간)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우리 사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인터넷 주소 : <http://www.molit.go.kr/drocm>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 공지사항

2) 평가자료 제출일 : 2020. 6. 22.(월) 14:00~17:00 (우편접수 불가)

3) 평가자료 제출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평가결과 적격업체 점수 통보 : 업체별 Fax 확인

《수신 가능한 Fax번호 및 담당자 연락처를 제출서류(신청서)에 표기》

5. 기타 유의사항

- 1) 본 세부평가기준은 우리 사무소에서 2020. 5. 12.이후 발주 공고하여 시행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용역에 적용한다.
- 2) 참여기술자는 동시에 2개 분야(사업책임, 분야책임, 분야참여)에 참여할 수 없다.
- 3)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965호(2018.01.04.))에 따른다.
- 4)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우리 사무소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5) 계약 후 평가 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반드시 충주국토관리사무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지정,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다.
- 6) 우리 사무소에서 발주한 사업의 PQ, 가격입찰 등이 진행 중일 경우 타 참여업체의 참여기술자를 고의에 의한 방법으로 퇴직, 이직

등을 조장하여 입찰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다.

- 7)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통보(충점) 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사무소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8) 평가자료 원본파일은 문서24*로 제출하고, 원본 1부(CD 1부 포함)는 제본하여 별도 제출한다.

* 문서24 :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공문서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https://open.gdoc.go.kr/index.do>)

- 9) 평가자료 교부는 우리 사무소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고, 평가에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우리 사무소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평가결과 통보 전까지 수시로 우리 사무소 홈페이지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홈페이지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 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10) 우리 사무소에서 용역 입찰참여를 제한한 업체는 본 용역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11) 본 용역사업에는 단독 또는 2개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시 참여기술자는 각 업체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회사가 됨

- 12)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충주 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담당자 : 채인정, ☎043-850-2563)로 문의.